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	------	------	------

신고인	구분 []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해제 [] 무효 [] 취소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